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2/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에 대해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고, 회사 내에서 관련법규와 사규에 대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신속한 보고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당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주 대상이며 그 외 이해관계자(디슈머·협력회사)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주관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운영규정에 관한 업무의 주관 부서는 자율준수 관리자 예하 재경본부(인사총무)로 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란 회사의 자율준수활동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재경본부(인사총무)” 이란 당사의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보좌하여, ACP팀이 수행하는 자율준수 업무와 관련된 주요업무를 조율하고 제반사항을 계획·실시·관리하는 등 자율준수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표준번호(Sta.No.) : ALT-A-050 개정일자(Rev.Date) : 2014.6.2
	개정번호(Rev.No.) : 1 페이지(Page) : 3/12

3. “ACP(Altwell Compliance Practice)팀” 이라 함은 당사의 자율준수 실천(실행)팀으로 자율준수와 관련된 업무를 실행하는 팀을 말한다.
4. “디슈머(Disumer)”란 당사 판매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앨트웰 마케팅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판매자임과 동시에 당사의 제·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당사의 마케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협력회사”란 당사와 제·상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기타 회사와 업무상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업체를 말한다.
6. “고객 또는 소비자”란 당사의 제·상품을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7. “자율준수활동(Corporate Compliance Activitirs)”이라 함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율준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공정거래 관련법령”이란 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보호법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한다.
9. “경쟁당국”이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를 말한다.
10. “제보자”란 공정거래 관련법령, 기타 회사의 사규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자율준수업무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재경본부(인사총무)에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